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0
----------	-----

2023년 4월 25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7일, 박강산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3. 상정일자
 -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3년 4월 25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강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 하나인 학부모 교육을 규정하여, 학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- 또한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 조항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학내 문제 관심 제고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적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.

2. 주요내용

- 학부모 교육내용을 신설함(안 제10조의2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박강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80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에 학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822건이었으나, 2021학년도에는 1,954건으로 무려 137.7% 증가하였으며 2022학년도 심의 건수는 2020학년도의 3.43배인 2,81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.

[표]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초	중	고	특수	각종	합계
2020학년도	160	401	257	3	1	822
2021학년도	511	947	486	8	2	1,954
2022학년도	840	1,430	539	3	6	2,818

-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여론조사(KEDI POLL)에 따르면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‘가정교육의 부재’를 꼽고 있어¹⁾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.²⁾
-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나. 학부모 교육(안 제10조의2)에 대한 검토

- 안 제10조의2제1항은 학교장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,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⁾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학교폭력 징후 판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안 제10조의2제1항이 상위법에 규정된 학부모 교육의 대강의 내용을 다양한 예시로 제시한 것은 제도의 시행과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⁴⁾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

1) ‘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’의 질문에 대한 전국 성인남녀의 응답에서 ‘가정교육의 부재’ 33.9%, ‘학교의 학생 지도 부족’ 26.6%, ‘폭력적 대중매체’ 17.1%, ‘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의한 영향’ 14.7%, ‘경쟁적 교육제도’ 4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2) 보도자료: 학폭 심의만 年 3만건… 학부모 예방 교육·사회적 대응 강화해야(서울신문, 2022.12.6.)

3) 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그리고 안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, 동 조항이 단위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위주의 형식적인 학부모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 참여 확대에 노력하도록 명시한 것은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353, 2023. 4. 7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-
- 4)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
3. 자녀와의 소통 방법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0조의2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</u> <u>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</u> <u>3. 자녀와의 소통 방법</u> <u>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</u> <u>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